

# 聯邦食品·藥品 및 化粧品法

## 目 次

- ◇ 第一章 表 題
- ◇ 第二章 定 義
- ◇ 第三章 禁止行爲 및 罰則
- ◇ 第四章 食 品
- ◇ 第七章 一般行政 規定
- ◇ 第八章 輸入 및 輸出
- ◇ 第九章 雜 則

### 第1章 表 題

第301條 0| 法律은 聯邦食品藥品및化粧品法이라  
고 略稱할 수 있다.

### 第2章 定 義

第321條 0| 法律의 目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a) (1) “州”라 함은 第372條의 最後의 文章을 除  
外하고 美合衆國의 모든 州或은 準州, 코럼비아特別  
區및 웨스트리코自治領을 意味한다.

(2) “準州”라 함은 코럼비아特別區를 包含하고,  
웨스트리코自治領및 運河地帶를 除外한 美合衆國의  
모든 準州 또는 所有地區를 意味한다.

(b) “州間商業”이라 함은 (1) 모든 州 또는 準州와  
其以外의 地域間의 去來, (2) 코럼비아特別區내에  
있어서의 去來, 或은 立法部가 構成되어 있지 않은  
다른 準州內에 있어서의 去來를 意味한다.

(c) “部”라 함은 美合衆國保健教育厚生部를 意味한

다.

(d) “長官”이라 함은 保健教育厚生部長官을 意味한  
다.

(e) “人”이라 함은 個人, 組合, 法人 및 團體를 包  
含한다.

(f) “食品”이라 함은 (1) 人間或은 다른 動物의 食  
用 또는 飲用으로 使用되는 物品, (2) 씹는껌 및  
(3) 이외한 物品의 構成物로 使用되는 物品을 意味  
한다.

(g) “藥品”이라 함은, (1) 美合衆國藥典 및 美合衆  
國同種療法藥典 또는 國民醫藥品處方集 또는 그려한  
것들에 對한 增補로서 認定된 物品 및 (2) 사람 或  
은 動物의 疾病의 診斷, 治愈, 輕減, 處置 또는 豫  
防에 使用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物品 및 (3) 사람  
or은 動物의 身體의 構造 또는 機能에 對하여 影響  
을 줄것을 目的으로 하는(食品以外의) 物品 및 (4)  
上記 (1) (2) (3)에서 記述한 物品의 構成物로서 使用  
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物品, 그러나 器具 또는  
그 構成物, 部品 또는 附屬物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h) “用具”(本條n項 331(i) 및 433(f) 352(c) 362(c)에서 사용될 경우는除外)라함은 (1) 사람 또는動物의 疾病의 診斷, 治愈, 輕減, 處置 또는豫防에 使用할 것을 또는 (2) 사람或是動物의 身體의 構造 또는 機能에 影響을 줄것을 目的으로 하는器具, 機械 또는 裝置(그리한 것들의 構成物, 部分品 附屬品을 包含)를 意味한다.

(i) “化粧品”이라함은, (1) 淨化, 美容, 魅力, 增進 或은 容貌變化를 為하여 人體 또는 그一部에 塗擦, 注入, 撒布 或은 噴霧 또는 內部攝取 또는 其他方法으로 使用하는 物品 및 (2) 그構成物로 使用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物品을 意味하며 이 用語는 비누는 包含하지 아니한다.

(j) “公定書”라함은 美合衆國藥典 美合衆國同種醫療法藥典 國民醫藥品處方法 또는 그 增補를 意味한다.

(k) “標示”라함은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의 直接的容器에 記載되고 印刷되고 또는 그림으로 그린 表示를 意味한다. 그리고 小賣를 為한 꾸림에 外部容器나 包裝紙가 있으면 그 위에도 語句說明等 其他의 情報를 外部容器, 包裝紙위에도 表示記載하고, 外部容器나 包裝을 通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 法律의 權限下에서 規定된 標示基準에 適合한 것으로 看做할 수 없다.

(l) “直接的容器”라함은 內部包裝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m) “標示書”라함은 (1) 모든 物品 또는 그容器와 包裝紙 위에, (2) 또는 그 物品과 같이 附隨하는 모든 標示 및 其他의 記載되고 印刷되고 또는 그림 그려진 物件을 意味한다.

(n) 만일 어떤 物品(食品, 藥品, 化粧品 等)이, 사람으로 하여금 混迷케하는 標示가 되어 있다는 理由로 不正表示라고 論難될 때는, 그 標示書가 사람을 混迷케 하는 것인지 아님지를 決定하기 위하여 說明文, 語句, 意匠 模樣 또는 그結合에 依하여 表現되거나 示唆된 表現뿐만 아니라, 그 表現에 얼마나 虛偽가 있으며, 그 標示書에 記載된 用法으로 或은 習慣的 또는 通常의 用法으로 그 物品을 使用

한 結果 事實表現에 얼마나 過失이 있는가 하는 點을 特히 考慮에 넣어야 한다.

(o) 標示에 防腐剤로서 表現하는 것으로 看做한다. 이때에 溫布 軟膏 粉末등과 같은 細菌繁殖의 抑制의 使用 或은 長期間身體에 接觸하게 되는 使用을 為한防腐剤를 目的으로 하는 藥品의 경우는 除外한다.

(p) “新藥”이라함은, (1) 標示書에 記載되고 廸告되고 또는 示唆된 條件下에서의 使用이 安全하고 有效한 것으로, 藥品의 安全性과 有效性를 評價하기 為한 科學的 訓練과 經驗으로 보아 資格이 있는 專門家사이에서 認定되지 아니한 成分을 갖인 藥品을 意味한다. 但 그렇게 認定되지 않은 藥品은 本法律의 制定以前의 어떤 時點에서 그것이 1906年 6月 30日의 食品藥品法 改正法의 適用을 받았다면, 또한 그 時點에서 標示書가 그藥品使用條件에 關하여 同一한 表現을 記載하였다면 “新藥”으로 看做되지 아니한다.

또는 (2) 成分이 위에서 表示한 狀態下에서의 使用을 為한 安全性과 有效性를 定하는 結果로서 安全하고 有效하다고 認定되었지만 調査目的의 用途로 表示된 바 있는 狀態下에서相當한 程度까지相當한 時間 동안 使用되지 않은 藥品을 意味한다.

(q) “農藥”이라함은 現行의(또 今後의 改訂을 包含한) 聯邦殺蟲劑, 殺菌劑 및 殺獵劑法에서 規定된 바에 따라서 單獨으로 化學的結合狀態에서 或은 1個以上의 他物質과 調合하여 “經濟上의 毒物”이 되며, 非加工農產物의 生產 貯藏 運搬에 使用되는 모든 物質을 意味한다.

(r) “非加工農產物”이라함은 생것 그대로의 自然 狀態에 있는 食品을 意味한다. 이것은 市販되기 前의 緊密을 뺏기지 않은 自然形態에서 洗滌되고 着色되고 또는 其他方法으로 處理한 모든 果實을 包含한다.

(s) “食品添加物”이라함은 그 目的으로 하는 使用으로 因하여, 直接 또는 間接으로 食品의 一部가 되든지 또는 食品의 性質에 影響을 미치는 結果를 가져오던지 結果를 가져올 것이 期待되는 物質이며(食品의 生產, 製造 包裝 加工, 調製 處理 個裝 輸送

또는 保存을 爲하여 使用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物質과 같은 目的을 爲하여 使用할 것을 目的으로하는 放射能의 源泉物質을 包含한다) 이하한 物質이, 그 安全性을 評價할 수 있도록 科學的 訓練과 經驗工資格이 있는 專門家 사이에서, 科學的 節次를 거쳐서 目的이 되어있는 使用法에 依하여 安全하다는 것을 充分히 誇示되었다고 一般的으로 認定되지 아니하는 것(或은 1958年 1月 1日以前에 食品이 使用할 物品의 경우에는 科學的 節次에 依하여 또 食品의 通常的使用에서 오는 經驗에 依하여 充分히 나타내었다고 認識되지 않을것)을 말한다. 但 다음에 揭示하는 것은 食品添加物에 包含되지 아니한다.

- (1) 非加工農產物內部 或은 表面에 使用하는 農藥
- (2) 非加工農產物의 生產, 貯藏 또는 輸送에 使用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또는 使用된 範圍의 農藥
- (3) 色素添加物
- (4) 本章 家禽製品検査法(21 U.S.C. 451 및 그 後續) 或은 1907年 3月 4日의 食肉検査法 改正板에 關하여 1958年 9月 6日 以前에 認可 또는 許可된 바에 따라서 使用되는 物質

(t) (1) “色素添加物”이라함은

- (A) 植物, 動物 鎌物 또는 其他物質로부터 中間的 或은 最終的으로 其性質을 變化하거나 變化하지 않고 合成 또는 類似한 方法으로 處理되고 抽出 分離 또는 導出된 染料 顏料(色素) 등의 材料.
- (B) 食品 藥品 또는 化粧品 或은 人間身體 및 身體의 一部에 添加 또는 使用하였을때(單獨으로 또는 다른 物質과 같이) 일어나는 反應을 通하여 着色할 수 있는 것.

但 長官이 規則에 依하여 定하는 着色以外의 目的에 使用하거나 使用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包含하지 아니한다.

(2) “色素”라함은 黑色, 白色, 中間灰色을 色含한다.

(3) 本項 1號는 生育 또는 土壤生產의 自爲生理的過程에 對하여 直接間接으로 助長, 阻害 또는 其他의 影響으로서 수화의 前이나 後를 莫論하고 其色의 影響을 미치는 까닭만으로 農藥 土壤 또는 植物榮養

劑或은 農業用化學物質에 使用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여서는 안된다.

(u) 本條(s)項, 本號法律(21) 348條, 360b條, 및 376條에서 便用하는 “安全”이라함은 人間 및 動物의 健康에 關한 것이다.

### 第三章 禁止行爲 및 罰則

#### 第331條 禁止行爲

다음에 揭記하는 行爲 및 其原因이 되는 行爲는 이를 行함을 禁止한다.

(a) 不良의 또는 不正表示의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을 州間商業에 導入하거나 또는 導入하기 为하여 讓渡하는 일.

(b) 州間商業의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의 質을 不良하게하거나 不正表示를 하는 일

(c) 州間商業에 있어서 不良或은 不正表示의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을 受領하는일 및 有償 또는 其他方法으로 讓渡 또는 讓渡의 意思表示를 하는일.

(d) 本號法律 第344條 또는 號355條를 違反하면 서 物品을 州間商業에 導入하거나 導入을 爲하여 讓渡하는일.

(e) 本號法律의 373條에 依하여 要求되는 記錄의 關覽 또는 複寫의 許可를 拒否하는일. 或은 本號法律의 355條(i) 또는 (j), 357條(d) 또는 (g), 360b條(j), (l), (m)의 規定에 依하여 要求되는 記錄의 確立과 保管 報告書提出을 慢慢하는일. 或은 이하한 要求된 記錄의 關覽, 立證 또는 複寫의 許可를 拒否하는일.

(f) 第374條의 權限에 依한 臨檢 또는 檢查의 許可를 拒否하는일.

(g) 準州內에서 不良한 또는 不正表示의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을 製造하는일.

(h) 本號法律(21)의 333條 (c) (2)에서 言及된바 있는 保證 또는 約束을 함에 있어서 靈偽의 保證 또는 約束을 하는일. 但 美合衆國에 居住하는 人로부터 善意로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을 받고 그 사람이 署名하고 그 性名과 住所를 적은 같은趣旨의 保證와 約束에 依支하여, 行한 것은 除外한

다. 또는 333條 (c) (3)에서 言及된 바있는 保證 또는 約束을 함에 있어서 虛偽의 保證 또는 約束을 하는일.

(i) 本號法律(21)의 344條, 356條, 357條, 또는 376條의 條項으로서 公布된 法規에 依하여 權限이 賦與되고 또는 要求되는 記號, 印章, 附札, 標示 또는 其他 識別을 為한 意匠을 費造, 偽造, 模造 또는 權限 없이 使用하는일.

(j) 去來上 秘密로 되어있는 裝法 또는 工程에 關하여 本號法律(21)의 344條, 348條, 355條, 356條, 357條, 360b條, 374條 또는 378條의 權能下에서 入手한 情報를 自己의 利益을 為하여 使用하거나 또는 長官 또는 그 官吏 또는 그 傭員以外의 사람에 對하여 或은 本章에 關한 裁判과 關連하는 法廷以外의 機關에 對하여 秘密을 누설하는일.

(k)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이 州間商業에 있어서 出荷後, 販賣를 為하여 保管되어 있는 사이에 (第一次販賣이전 不然이전을 不問하고) 標示書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變更, 毀損, 破壞, 抹殺, 除去하고 或은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에 對하여 其他行為를 加함으로서 이 物件이 不良食品이 되거나 不正標示가 되는 結果를 招來하는일.

(l) 藥品의 標示에 또는 藥品에 關係가 있는 廣告에 이려한 藥品에 關한 申請이 本號法律(21) 355條에 規定에 依하여 承認되어 있다는 表現 또는 示唆를 하거나 또는 이려한 藥品이 同條의 規定에 適合하는 것이라는 表現 또는 示唆를 하는일.

(m) 本號法律(21) 347條의 (b) 및 (c)의 規定을違反하여 着色된 오레오마가린 또는 着色마가린을 販賣하거나 販賣에 提供하는일. 或은 着色오레오마가린 또는 着色마가린을 所有하거나 食用으로 提供하는일.

(o) 州間商業에 있어서 販賣를 為하여, 分配되고 또는 提供되는 處方藥의 경우에 製造業者 또는 販賣業者가 該當州法에 依하여 이려한 藥品을 取扱하는 免許를 받은 開業者에게 文書로서 資料를 要求한데 分配 또는 販賣되는 藥品의 個個는 包裝內에 同封하여야 하는 모든 印刷物의 真正한 寫本 또는 長官이 認可

하는 其他印刷物의 真正한 寫本을 要求할 때 傳達하기 為하여 維持함을 慢慢하는일. 本項의 어떠한 語句도 本法律의 他條項으로서 賦課되는 表示義務로부터 免除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없다.

(p) 本號法律(21)의 360條에서 要求되는 登錄을 慢慢하는일.

### 第332條 禁止命令의 節次

#### (a) 裁判所의 實轄

美合衆國의 地方裁判所 및 合衆國領域裁判所는 提示된 訴訟에 對하여 28號法律 381條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當事者에 對한 通知에 關한 것) 本號法律 331條中 (h) (i) (j)項을 除外한 各項의 違反을 抑制하기 為한 裁判權을 갖는다.

#### (b) 禁止命令의 違反

本條에 依하여 發布된 禁止 또는 制限命令의 違反 (이것은 곧 本章의 違反을 構成하는 것인데)의 경우에는 裁判은 裁判所에 依하여 或은 被告人의 要求에 따라서 倍審員에 依하여 行하여진다. 이와 같은 裁判은 28法律의 387條의 規定에 依한 訴訟手續의 경우에 適用하는 訴訟實務와 節次에 따라서 適行된다.

### 第333條 罰則

#### (a) 本號法律 (21) 331條의 違反

本號法律 331條規定을 反違하는 者는 1年以下の懲役 또는 1,000弗以下의 罰金 또는 兩者에 併科에 處한다.

#### (b) 二次違反: 欺瞞하고 誤認케 하려는 意圖

本條의 (a)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條에 依하여 有罪宣告가 確定된 後에 宣告받은 사람이 또 이려한 違反을 犯하고 欺瞞하고 誤認시키는 意圖를 갖고 그리하였을 때에는 이 사람은 3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0弗以下의 罰金 또는 兩者併科에 處한다.

#### (c) 善意등등의 一定한 경우의 例外

(1) 어떠한 사람도 州間商業에 있어서 物品을 받고 讓渡하고 또는 提供함으로 因하여서는 만일 이려한 일이 善意를 갖고 行하여진 것이고 長官이 正當히 指定한 官吏 또는 傭員의 要求에 따라서 購入 또는 受領한 相對方의 姓名住所 또는 만일 可能하면 그 物品의 讓渡에 關한 모든 文書의 複寫를 提供함

을 拒絕하지 아니하는 限 本條(a), 罰則을 받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사람이던지 만일 美合衆國에 居住하는 사람으로 부터 善意를 갖고 物品을 받고 그 사람의 姓名과 住所가 적혀있는 保證 또는 約束이 331條의

(a) 違反으로 물려있을때에는 이 物品은 本章의 意味의 範圍內에서 不良한 것도 아니고 不正表示된 것도 아니라는 趣旨의 또 331條(d)의 違反으로 물려있을 때에는 이 物品은 本法律 344條 또는 355條의 規定下에서 州間商業에 導入될 수 없는 物品이 아니라는 趣旨로 되어 있다는 것을 立證하면은 331條(a) 또는 (d)를 違反한 것으로서는 本條(a)의 罰則을 받지 아니한다.

(3) 어떠한 사람도 本章下에서 長官이 公布한 規則에 따라서 認證되지 않은 色素添加物을 含有하고 있다는 理由로서 不良한 까닭에 違反이 存在하는 경우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色素添加物이 本章下에서 長官이 公布한 規則에 따라서 認證된 部分이라는 趣旨의 色素添加物製造者的署名이 있고 그 姓名 및 住所를 記載한 保證 또는 約束을 確證하면 331條를 違反한 것으로 本條(a)의 罰則을 받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사람도, 353條(a), 353條(b)(1)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州間商業에서 受領한 物品에 있어서 만일 그 讓度 또는 讓度에 對한 提供이 善意로서 이루어지고 그때의 表示書가 受領하였을때에 表示書에 記載된 것과 同一한 使用法 및 注意書를 記載하는 것이라면 352條(f)에 適合치 못함으로서 331條(b)(c) 또는 (k)를 違反한 것으로하여 本條(a)의 罰則을 받지 아니한다.

### 第334條 押 収

#### (a) 根據 및 管轄

(1) 州間商業에 導入되었을때, 또는 州間商業의 途中에 或은(第一次販賣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不問하고), 出荷後에 販賣의 目的으로 保管되어 있는 사이에 品質이 不良하게 되고 不正表示의 物件이 된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 또는 344條, 355條의 規定에 依하여 州間商業에 導入되어서는 않되는 食

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은 州間商業의 途中에 또는 其後 언제든지 當該物品이 發見된 地區를 管轄하는 美合衆國의 모든 地區裁判所에서 起訴되고 收用된다.

但 그러나 다른 裁判所에서 不正表示件으로 本章에 依하여 訴訟中인 没收에 對한 裁判이 未決狀態에 있을때에는 同一한 不正表示에 關하여 没收를 爲한 裁判은 成立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制限은 다음의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A) 이와 같은 不正表示가 刑事上의 禁止命令 또는 本章에 依하여 手續中인 没收를 爲한 裁判에 있어서 合衆國의 利益이 되는 以前判決의 根據가 되는 것일때.

(B) 長官 또는 部의 官吏或者 傭員이 發見한 事實로부터 聽聞함이 없이 그 不正表示品目이 健康에 危害하고 不正表示物品의 標示書가 詐欺의이고 또는 購買者 또는 消費者로 하여금 重大한 傷害를 미치는 일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될때.

沒收手續에 對한 訴訟의 數가 訴訟이 未決이거나 또는 成立된 경우 上記한 바와 같이 制限되었을 때에는 原告의 正當히 行한 申請에 依據하여 訴訟當事者間의 約定으로서 相互間에 合意한 地區로 裁判을 移動할 수 있다. 또한 正當한 期間內에 合意約定을 보지 못할 때에는 没收가 行하여진 地區의 裁判所에 申請할 수 있으며, 이 裁判所는 (이 地區의 合衆國地方檢事에게 正當한 通知를 하고 聽聞의 機會를 준후에) 適切한 反對理由가 提示되지 않는限 命令으로서 原告의 營業場所에 正當히 近接한 地區를 指定할 수 있고 그 곳으로 裁判을 爲하여 事件이 移送된다.

#### (b) 手續:複數의 未決訴訟手續

起訴된 物品, 機具, 其他의 物件은 裁判에 關한 過程을 거쳐서 没收되며 本條에 依한 手續은 可能한限 正確하게 海事裁判所의 手續과 一致하여야 한다. 但 訴訟當事者の 要求에 依하여 어떠한 事件의 事實論爭을 審査員이 試圖하는 경우는 除外한다. 本條에 依한 没收手續의 裁判이 同一原告와 不良 또는 不正表示의 同一係爭을 갖고 있고 2個以上의 裁判管轄權의 未決問題가 있을때 어떠한 未決의 訴訟은原告가 裁判管轄權이 있는 裁判所에 正當하게 申請함

으로서 法廷命令에 依하여 한개의 裁判으로 統一되어야 하고 裁判은 (1) 原告가 選擇하고, 이러한 未決訴訟件이 있는 地區, 또는 (2) 兩當事者間의 約定으로서 合意된 地區에서 行하게 된다. 만일 相當한 期間內에 統一을 為한 命令이 나오지 아니할 때에는原告는 이러한 裁判管轄權이 있는 한 個所의 裁判所에 申請할 수 있다. (合衆國地方檢事에게 正當한 通告와 聽聞의 權會를 떠운後에) 그리고 그 裁判所는 反對할 正當한 理由가 提示되지 아니하는限, 命令으로原告의 主된 营業場所에 가장 接近한 地區를指定하여야 한다. 그 地區에서 모든 未決訴訟手續은 하나로 統一되어 裁判된다. 이러한 統一에 對한 命令은 이미 裁判期日이 決定된 것을 變更하여야 하도록 適用하여서는 않된다. 이러한 命令을 내리는 裁判所가 迅速히 當該事件에 管轄權을 갖이고 있는 餘他 裁判所에 通告하여야 한다.

(c) 裁判前의 押收物品의 標品入手可能性

裁判所는 押收後 裁判에 이르는 相當한 期間동안 命令으로 그 没收訴訟에 關係가 있는 當事者 辯護士 또는 代理人이 押收된 物品의 標品 및 만일 있으면 訴訟의 基礎가 되고 있는 分析의 真正한 寫本 및 만일 있으면 標品이 그로부터 分析用으로 採取된 바 있는 되고 入手된 個裝의 識別表示(마크)와 番號를 入手할 수 있도록 許容하여야 한다.

(d) 没收判決後의 物品의 處分 没收品의 免除와 輕減의 請求

本條에 依하여 没收된 食品, 藥品, 用具 또는 化粧品은 判決後에는 本條의 規定에 따라서 裁判所가 指示하는 대로 廢棄處分하던지 賣却處分하여야 하며 賣却處分되었을 때에는 賣却代金은 裁判費用 및 料金을 控除한 後 合衆國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物品은 本章의 規定이나 賣却을 管轄하는 法律에 違背될 때에는 賣却할 수 없다. 但 判決後에 그리고 이러한 訴訟手續에 對한 費用을 納付하고 이러한 物品을 本章의 規定 또는 各州 또는 準州의 諸法에 反하여 賣却하거나 處分하지 아니한다는 正當하고 充分한 保證을 提出할 때, 裁判所는 命令으로 이 物品을 所有主에게 引渡하여 長官이 正當히 指定한 官吏 또는 傭員의 監督下에 本章規定에 어긋남이 없이 廢棄되든지 處分하도록 指示할 수 있다.

(e) 費用

物品에 對하여 没收判決이 내려질 때에는 裁判費用 料金 및 保管料 其他 隨伴되는 經費는 만일 物品의請求者로서 介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支拂하여야 한다.

(f) 裁判을 為한 事件의 移送

本條 (a) 또는 (b)에서 規定한 裁判의 移送의 경우, (1) 事件을 移送시키는 裁判所의 書記는 移送을 받은 裁判所가 裁判權을 行使하기 為하기 遲滯없이 모든 事件記錄을 送附하지 아니하면 않된다.

(계속·황창우 번역)

## 第38號 食品工業

1970年 10月 18日 登錄 바 第355號 1977年 8月 30日 發行

發行兼  
編輯人 朴炳圭

發行處 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4街 125의 1

(進洋아파트 610호)

② 8760 ④ 6035

對替口座·서울中央 610501

印刷人 由盛印刷株式社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冷泉洞 218

⑦ 3791 ④ 5826

(隔月刊)